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674
-------------	-----

제출년월일 : '98. 4.

제출자 : 안산시장

## 1. 개정이유

- 개정취지 :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현행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 현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 앞으로는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 현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개정(국가유공자 안 제2조, 장애인 안 제4조)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규정 신설(국가유공자 안 제2조 3항 4호, 장애인 안 제4조 2항 4호)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경기도 세정 13400-277('98.2.18)호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p>

현 행	개 정 안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이 인정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신 설〉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 ----- ----- ----- ----- -----  ----- <u>자동차로</u>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p>
<p>〈신 설〉</p>	<p>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p>
<p>②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신 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 (현행과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674

제출년월일 : 1998. 4. 29.

제출자 : 총무위원장  
박공진 외 10인

### 1. 수정이유

- 제2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일부 불필요한 용어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함.

### 2. 수정주요골자

- 제2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로 수정함.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증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로 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 약)</p> <p>② (생 약)</p> <p>1.~4. (생 약)</p> <p>③ (생 약)</p> <p>1. (생 약)</p> <p>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p> <p>3.~4. (생 약)</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1.~4.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p> <p>.....</p> <p>.....</p> <p><u>장이</u> .....</p> <p>3.~4. (원안과 같음)</p>